

비외감 중소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 금융기관 제출 재무제표의 인증 수준별 비교 -

허광복**

<요 약>

본 연구는 국내의 비외감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조달 목적을 위해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지를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과 그 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 간의 비교를 통한 이익조정 행태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비외감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제출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라 이익조정의 정도 차이를 발생액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상장 및 외감 기업과 달리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외감 기업은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어 이와 관련한 규제 장치가 적고 관련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부감사를 별도로 받지 않는 비외감 기업이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른 회계투명성 차이를 검증하는 것은 관련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98,164개 비외감기업(기업/연 자료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Dechow et al.(1995)과 Kothari et al.(2005)의 모형을 통해 도출한 두 가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이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생액이 높게 나타나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자 보고 비외감 기업인 경우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이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에 비해 이익을 상대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외감 기업이 금융기관 차입 시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이외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발생액 이익조정을 이용해 이익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비외감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시의 이익조정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비외감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확인 및 증명에 대한 관련 정책 수립의 방향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비외감 기업, 발생액 이익조정, 재무제표 증명, 재무제표 확인

* “이 논문은 2015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kbhur@dongduk.ac.kr

I.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별도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비외감 기업이 금융기관 대출 목적을 위해 발생액을 조정하여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는지 재무제표 제출 용도를 구분하여 이익조정 행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상장 및 외감 기업과는 달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인 비외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정보에 대한 이용자가 많지 않아 회계투명성이 낮은 편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다.

비외감 대상 중소기업의 회계목적은 정확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측정이라는 기업회계의 목적보다는 조세 측면에서의 절세와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한 회계 목적에 주로 초점을 두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투자자 중심의 회계가 상장 및 외감 기업에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채권자(금융기관)와 정부기관(국세청) 중심의 회계로 한정되는 회계가 비외감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비외감 중소기업이 세법 위주의 회계관행을 가지고 있으며, 회계와 재무보고의 투명성에 대하여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중소기업의 자사 재무제표를 외부에 제출하는 경우는 세금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과 공공기관 입찰, 금융기관 대출 및 거래업체 요구 등 해당 회사의 신용을 평가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해당 회사의 신용 평가를 위해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외감 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요구하며, 그 외의 비외감 대상 회사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재무제표,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외감 회사에 대해 요구하는 재무제표를 제3자 확인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우선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이 확인한 재무제표는 세무신고 사실만 세무대리인이 확인하여 준 재무제표로 진위 여부(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표와 동일한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는 불문이다. 그리고 세무서장이 증명한 재무제표는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로 표준재무제표 증명으로 홈택스 민원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국세청은 2000년부터 이전에 세무서에서 발급 및 수행해 온 재무제표 확인서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¹⁾하였다.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 확인은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해 제출하는 재무제표가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조세에 대한 신고서류와 차이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세무대리인에 의해 확인된 재무제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거래처 납품 시 등에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비외감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회계감사제도 외의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1) 세무사법 제2조에서 “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해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의 확인 및 그 부대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비외감 기업²⁾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조달 목적을 위해 발생액을 조정하여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지를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과 그 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 간의 비교를 통해 이익조정 행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그 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에 비해 단순 확인이 아니라 증명에 가까운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이익조정 현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존 이익조정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외감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외감 기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적으로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외감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제출한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라 이익조정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과 그 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 간에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보다 그 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이 발생액이 높아 상대적으로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자를 보고한 기업인 경우 이익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적자 보고 기업인 경우에도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보다 그 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이 발생액이 높아 상대적으로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비외감 기업이 세무서장 증명 외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상향 이익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공헌점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대부분의 이익조정 선행연구가 상장 기업 및 비상장 외감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본 연구는 데이터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최근까지 논의가 제한적이었던 비외감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라 이익조정 실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있다. 또한 비외감 기업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의 이익조정 실태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비외감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의 확인 및 증명에 대한 정책 수립의 방향 및 개선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과 더불어 제Ⅱ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현황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제Ⅲ장에서는 가설, 연구모형 및 표본을 기술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하며,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기술한다.

2) 외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상장법인, 등록법인 및 상장·등록예정법인과 주식회사 중에서 자산총액이 120억 원이 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회사를 외감 기업이라 한다. 비외감 기업은 외감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II.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현황 및 선행연구

1.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현황

한국의 경우 전체 기업체 수의 99% 이상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별도로 공인회계사에 의해 수행되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들로 비외감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향상이 조명되고 있다. 국세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법인세 신고를 한 법인 수 총 645,061개 중에서 법인 종류 중 주식회사 형태는 611,641개이다.³⁾ 전체 법인 중 상장법인은 1,922개(주권상장법인 776개와 코스닥상장법인 1,146개)이며, 나머지 643,139개는 비상장법인이다.

주식회사 형태의 비상장법인 중 외감 대상회사는 27,114개⁴⁾로 외감 대상을 제외한 비외감 법인은 약 61만여 개로 추정된다. 상장기업과 비상장 외감 기업에 비하여 비외감 기업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대부분 실질적인 소유주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적인 지분 보호를 위하여 회계투명성 확보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비외감 중소기업의 경우 외감 기업과 비교하면 기업의 규모가 작으며, 회계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회계정보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으므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미약한 현실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⁵⁾의 자체 회계처리 역량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회계처리를 세법 중심으로 수행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허광복 등 2012). 따라서 비외감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금융기관과 같은 채권자는 비외감 기업의 주요한 외부 정보이용자가 되며, 중소기업을 상대하는 금융기관은 대출 관련 의사결정 시 해당 비외감 기업의 회계정보의 신뢰성 정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제표를 외부에 제출하는 경우는 세금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과 공공기관 입찰, 금융기관 대출 및 거래업체 요구 등 해당 회사의 신용을 평가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중 비외감 중소기업의 주된 회계정보이용자인 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투명성을 낮게 평가하여 회계정보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중소기업의 낮은 회계품질로 인하여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금융기관들은 신용평가에 입각한 신용대출보다 담보 및 신용보증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금융기관 대출 시 순수 신용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중소기업 재무

3) 국세청, 2017년 국세통계연보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6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5) 중소기업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규모조건을 판단하였으나 2015년부터 개정되어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기업을 의미하며, 업종과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제표에 대한 회계품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⁶⁾

금융기관은 대출 시행을 위해 해당 회사의 신용 평가를 위해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외감 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요구하며, 그 외의 비외감 대상 회사의 경우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인 비외감 회사에 대해 요구하는 재무제표를 제3자 확인 단계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이하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라 함)⁷⁾는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와 같음을 증명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으로 홈택스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이 확인한 재무제표(이하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라 함)⁸⁾는 세무신고 사실만 세무대리인이 확인하여 준 재무제표로 진위 여부(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표와 동일한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는 불문이다.

국세청은 2000년부터 이전에 세무서에서 발급 및 수행해 온 재무제표 확인서를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⁹⁾하였다.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 확인은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해 제출하는 재무제표가 조세당국에 제공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인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세무대리인에 의해 확인된 재무제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거래처 납품 시 등에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비외감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회계감사제도 외의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2. 선행연구

비외감 대상 중소기업의 경우 외감 대상 기업과 비교할 때 기업규모가 작고, 회계정보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회계정보에 대한 공시의무가 거의 없으므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비외감 중소기업의 대부분의 자금조달이 은행을 통한 차입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금융기관 등과 같은 채권자들이 비외감 기업의 경우에는 주요한 외부 정보이용자가 된다.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는 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현택(1998)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중

6) 중소기업중앙회(2018), 2017년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7) 별첨 부록 서식 1 참조

8) 별첨 부록 서식 2 참조

9) 세무사법 제2조에서 “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해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의 확인 및 그 부대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기업의 회계처리 규정의 활용도를 살펴보았는데 회계처리 규정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주로 세법 규정에 따라 장부 기장을 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회계처리나 회계정보 공시에 있어 세법 규정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관(2004)은 비외감 대상 중소기업 회계담당자,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외감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기업 회계담당자를 제외한 이해관계자들은 비외감 대상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비외감 대상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낮은 이유로 조세회피를 위한 회계분식과 무자료 거래 등과 같은 회계자료의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윤과 정정용(2005)은 중소기업 회계담당자, 세무대리인, 금융기관 대출담당자 및 정부기관 인허가 담당자 등 재무제표 이용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재무제표 확인과 증명 업무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세무대리인에 의해 확인된 재무제표에 대해 금융기관 대출담당자 및 정부기관 인허가 담당자 등의 재무제표 이용자 당사자는 단순한 장부확인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을 보여주었으며, 약식검토 수준인 재무제표 증명 업무는 재무제표 확인 업무보다 더 많은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하여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자료 수집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 상장 중소기업 또는 비상장 외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의 이익조정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선행연구들은 상장 및 외감 기업을 대상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소수 연구에서 비상장 외감 중소기업에 대한 이익조정 실태가 조사되었다.

비상장 외감 중소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종서와 박영민(2010)은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실태를 비상장 외감 중소기업 18,523개 표본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는데 금융기관 신규차입 및 적자보고회피를 위해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에서 이익을 높게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비외감 기업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선행연구는 일부의 외감 중소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이익조정 현상을 살펴보고 있으므로 전체 중소기업의 이익조정 행태를 대표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외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성배와 조동수(2006)는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횡단면적 분포모형을 이용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139개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수집하여 이익조정의 유무에 대해 검증하였고 추가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이익조정의 여부와 관련 수단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결손회피 및 전기 대비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해 비외감 중소기업이 이익을 높게 조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비용 미계상 등의 순서로 이용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허광복(2016)은 외감 및 비외감 중소기업 212,688개 표본을 대상으로 발생액 이익조정 실태를 살펴보았는데, 비외감 중소기업은 외감 중소기업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일 수록 금융기관 차입을 위해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는 규모가 작은 비외감 중소기업의 경우 이익조정 유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익조정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외감 여부에 따른 이익조정 실태에 한정하고 있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제표 종류 별 이익조정 현상은 거의 분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외감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외부에 제출하는 경우 재무제표의 확인 단계 및 종류에 따라 이익조정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회계투명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설계

1. 가설설정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회사의 신용 평가를 위해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외감 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요구하며, 그 외의 비외감 대상 회사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재무제표,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비외감 대상이므로 비외감 중소기업에 대해 요구되는 재무제표는 제3자 확인 단계에 따라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김광윤과 정정용(2005)은 중소기업 재무제표 확인과 증명 업무에 대한 인식 차이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는 단순한 장부확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며, 재무제표 증명 업무는 재무제표 확인 업무보다 더욱 높은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비외감 중소기업이 주로 제출하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는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보다 단순한 장부 확인에 불과하므로 은행 대출을 위해 이익을 높이는 이익조정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

비외감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자금조달의 원천이 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적 요소에 대한 평가 개선을 위해 이익을 부풀리는 이익조정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금융기관의 경우 외부감사 받지 않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비외감 중소기업에 대한 이익조정 탐색이 대출심사의 결정 시 중요한 재무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외감 중소기업이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른 이익조정 행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금융기관 대출 시 제출한 비외감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의 이익조정은 세무서 제출(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와 그 외(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간에 차이가 없다.

또한 본 연구는 적자보고회피 목적에 따른 이익조정 현상이 있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이러한 현상이 비외감 기업에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한다. 최종서와 광영민(2010)은 외감 대상 중소기업의 경우 적자보고회피를 위해 이익조정을 통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자금조달의 원천이 많지 않는 비외감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차입을 하는 경우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차입이 곤란할 수 있으며, 기존 차입에 대하여 조기상환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이익 상향조정 현상의 차이가 비외감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 종류에 따라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비외감 기업의 경우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는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보다 이익의 상향 조정 현상이 상대적으로 더욱 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외감 중소기업이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른 중소기업의 적자보고회피 목적을 위한 이익조정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가설 2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2] 금융기관 대출 시 제출한 비외감 중소기업의 재무제표의 이익조정은 당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 제출(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와 그 외(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간에 차이가 없다.

2. 변수의 정의와 연구모형

가. 영업활동현금흐름에 대한 추정

본 연구는 국내 비외감 대상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액을 조정하여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지 세무서장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과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 간의 비교를 통해 이익조정 행태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외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살펴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익조정 측정을 위해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고 있으며, 발생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회계이익 외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외감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흐름표가 제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표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외감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흐름표가 별도로 제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가 사용한 측정방법을 수정하여 이용하였다(Jones 1991 ; Dechow et al. 1995 ; 김권중 등 1998 ; 배길수 1999).¹⁰⁾

10) 김권중 등(1998)와 배길수(1999)는 총발생액과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이용된 모형

발생액(accruals)은 회계이익에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차감해 도출하며, 발생액은 유동발생액(current accruals)과 비유동발생액(non-current accruals)으로 나누어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는 Dechow et al.(1995), 김권중 등(1998) 등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총발생액과 영업활동현금흐름 추정모형을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총발생액과 영업활동현금흐름 추정치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text{총발생액}(TAC) = \text{유동발생액}(CA) + \text{비유동발생액}(NCA)$$

$$\text{유동발생액}(CA) = t\text{기의 유동자산 증감}(\Delta OA) - t\text{기의 유동부채 증감}(\Delta OL)$$

$$\Delta OA = t\text{기의 } OA - (t-1\text{기})\text{의 } OA$$

$$\Delta OL = t\text{기의 } OL - (t-1\text{기})\text{의 } OL$$

$$OA = (\text{유동자산} - \text{현금및현금성자산} - \text{단기금융상품} - \text{유가증권} - \text{단기대여금} - \text{미수금})$$

$$OL = (\text{유동부채} - \text{단기차입금} - \text{미지급금} - \text{유동성장기부채})$$

$$\text{비유동발생액}(NCA) = (\text{현금유입이 없는 수익} - \text{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 -(\text{유형} \cdot \text{무형자산 감가상각비} + \text{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text{영업활동현금흐름}(CFO) = \text{당기순이익}(NI) - \text{총발생액}(TAC)$$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된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이용해 비외감 기업에 대한 재량적 발생액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¹¹⁾

나. 재량적 발생액의 측정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발생액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정의된 발생액을 사용하여 본 연구는 재량적 발생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TAC_{i,t} = NI_{i,t} - CFO_{i,t}$$

에 기반하여 유동발생액 항목에 장기성 영업자산(선급금, 매출채권 등)과 영업부채(선수금, 매입채무 등)의 증감을 추가하여 살펴보고, 비유동발생액 항목에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 11)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본 연구 기간과 동일하게 KIS-VALUE를 통해 본 연구의 표본과는 별도로 수집하여 현금흐름표상의 외감 기업 자료(106,897개)의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본 연구에서 추정된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상관계수(총자산으로 자산규모효과를 통제된 영업활동현금흐름비율)를 추가 분석한 결과 그 값은 0.996이 도출되었다. 김권중 등(1998)과 배길수(1999)의 연구모형을 수정해 이용한 경우 상관계수는 그 값이 0.993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높은 상관계수의 결과치는 비외감 중소기업의 영업활동현금흐름에 대한 측정오류가 본 연구에 대한 결과해석에 있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적다고 볼 수 있다.

$TAC_{i,t}$: i기업의 t기의 총발생액
 $NI_{i,t}$: i기업의 t기의 당기순이익
 $CFO_{i,t}$: i기업의 t기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발생액 중 경영자에 의해 조정될 수가 있는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수정 Jones 모형과 Kothari et al.(2005) 모형 두 가지 모형을 이용하였다. 우선 Dechow et al.(1995)이 제안한 수정 Jones 모형을 이용해 산업별 횡단면분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추정한 후 비재량적 발생액의 기대치를 산출하였으며, 실제 발생액에서 기대치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도출하였다. 비재량적 발생액의 기대치는 연도별 및 산업별(중분류 기준)로 하여 20개 이상이 있는 표본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frac{TAC_{i,t}}{Asset_{i,t-1}} = \alpha_1 \frac{1}{Asset_{i,t-1}} + \alpha_2 \frac{(\Delta REV_{i,t} - \Delta REC_{i,t})}{Asset_{i,t-1}} + \alpha_3 \frac{PPE_{i,t}}{Asset_{i,t-1}} + \epsilon_{i,t}$$

$TAC_{i,t}$: i기업의 t기의 총발생액
 $Asset_{i,t-1}$: i기업의 t-1기의 총자산
 $\Delta REV_{i,t}$: i기업의 t기의 매출액 증감분[=t기 매출액-(t-1)기 매출액]
 $\Delta REC_{i,t}$: i기업의 t기의 매출채권 증감분[=t기 매출채권-(t-1)기 매출채권]
 $PPE_{i,t}$: i기업의 t기의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

$$DACmj_{i,t} = \frac{TAC_{i,t}}{Asset_{i,t-1}} - (\hat{\alpha}_1 \frac{1}{Asset_{i,t-1}} + \hat{\alpha}_2 \frac{(\Delta REV_{i,t} - \Delta REC_{i,t})}{Asset_{i,t-1}} + \hat{\alpha}_3 \frac{PPE_{i,t}}{Asset_{i,t-1}})$$

$DACmj_{i,t}$: 수정 Jones모형을 이용한 i기업의 t기의 재량적 발생액

또한 Kothari et al.(2005)이 제안한 모형을 이용하여 산업별 횡단면분석에 의하여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한 후 비재량적 발생액의 기대치를 산출하였으며, 실제 발생액에서 산출된 기대치를 차감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도출하였다.

$$\begin{aligned} \frac{TAC_{i,t}}{Asset_{i,t-1}} = & \alpha_1 \frac{1}{Asset_{i,t-1}} + \alpha_2 \frac{(\Delta REV_{i,t} - \Delta REC_{i,t})}{Asset_{i,t-1}} + \alpha_3 \frac{PPE_{i,t}}{Asset_{i,t-1}} \\ & + \alpha_4 ROA_{i,t-1} + \epsilon_{i,t} \end{aligned}$$

$TAC_{i,t}$: i기업의 t기의 총발생액
 $Asset_{i,t-1}$: i기업의 t-1기의 총자산
 $\Delta REV_{i,t}$: i기업의 t기의 매출액 증감분[=t기 매출액-(t-1)기 매출액]
 $\Delta REC_{i,t}$: i기업의 t기의 매출채권 증감분[=t기 매출채권-(t-1)기 매출채권]
 $PPE_{i,t}$: i기업의 t기의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
 $ROA_{i,t-1}$: i기업의 t-1기의 투자수익률

$$DAck_{i,t} = \frac{TAC_{i,t}}{Asset_{i,t-1}} - (\hat{\alpha}_1 \frac{1}{Asset_{i,t-1}} + \hat{\alpha}_2 \frac{(\Delta REV_{i,t} - \Delta REC_{i,t})}{Asset_{i,t-1}} + \hat{\alpha}_3 \frac{PPE_{i,t}}{Asset_{i,t-1}} + \hat{\alpha}_4 ROA_{i,t-1})$$

$DAck_{i,t}$: Kothari et al. 모형을 이용한 i기업의 t기의 재량적 발생액

다.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국내 비외감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조달을 위해 위해 발생액을 조정하여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는지를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과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 간의 비교를 통해 이익조정 행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이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과 비교하여 이익조정의 성향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모형식 (1)을 모형으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자보고회피 목적에 따른 이익조정 행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식 (2)와 (3)을 설정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앞에서 서술한 두 가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집단별 이익조정 차이분석에 추가하여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음의 회귀식을 사용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모형식 (1)]

$$EM_{i,t} = \beta_0 + \beta_1 Dnon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ROA_{i,t} + \beta_5 YEAR + \beta_6 IDTY + \epsilon_{i,t}$$

[모형식 (2)]

$$EM_{i,t} = \beta_0 + \beta_1 Dnon_{i,t} + \beta_2 Dloss_{i,t} + \beta_3 SIZE_{i,t} + \beta_4 LEV_{i,t} + \beta_5 ROA_{i,t} + \beta_6 YEAR + \beta_7 IDTY + \epsilon_{i,t}$$

[모형식 (3)]

$$EM_{i,t} = \beta_0 + \beta_1 Dnon_{i,t} + \beta_2 Dloss_{i,t} + \beta_3 Dnon_{i,t} \cdot Dloss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beta_6 ROA_{i,t} + \beta_7 YEAR + \beta_8 IDTY + \epsilon_{i,t}$$

$EM_{i,t}$: 수정 Jones모형을 이용한 i기업의 t기의 재량적 발생액[EM1=DAck]

Kothari et al 모형을 이용한 i기업의 t기의 재량적 발생액[Em2=DAck]

$Dnon_{i,t}$: 재무제표 종류를 구분하는 더미(세무대리인 확인 기업이면 1, 그 외 증명은 0)

$Dloss_{i,t}$: 결손 유무를 구분하는 더미(당기순이익 < 0 집단이면 1, 그 외는 0)

$SIZE_{i,t}$: t기의 기업규모[=ln(t기 자산총계)]

$LEV_{i,t}$: t기의 부채비율[=총부채 ÷ 총자산]

$ROA_{i,t}$: t기의 총자산수익률[=(t기 당기순이익 ÷ (t-1)기 자산총계)]

YEAR : 연도 더미

IDTY : 산업별 구분 더미(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

모형식 (1), (2) 및 (3)의 종속변수는 이익조정 변수로 수정 Jones 모형과 Kothari et al.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이다. 위의 모형식에서 Dnon는 비외감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재무제표의 종류를 구분하는 변수로서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이면 1, 아니면(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이면) 0인 더미변수이다. Dnon의 계수인 β_1 이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면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이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시사하며,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면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모형식(2)와 (3)의 Dloss는 당해 회계이익의 결손 여부를 나타낸다. Dloss는 당기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이다. 또한 모형식(3)의 더미변수 간 결합변수인 Dnon · Dloss는 재무제표의 종류와 적자보고 여부를 나타내는 교차항 변수이며, Dnon · Dloss의 계수인 β_3 이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주면 비외감 기업이 적자 보고 시에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이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관련 통제변수의 선정과 관련하여 외감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이익조정 관련 선행연구에 따라서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총자산수익률(ROA) 변수를 포함하였고, 이 외 연도(YEAR)와 산업(IDTY) 더미변수를 본 연구의 모형식에 포함하였다. SIZE 변수치는 기말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계산한 값으로 측정되었으며, 모형에 있어 생략변수(omitted variables)의 대용치로서 표본기업 간의 횡단면적 이질성에 대한 포괄적인 통제를 위해 포함하였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정치적인 비용이 증가하므로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것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경우 나타났으나, 비상장 외감 기업과 비외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정치적 비용가설과는 다르게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익조정이 높게 나타났다(최종서 · 광영민 2010 ; 최정운 등 2014 ; 허광복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외감 기업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하므로 정치적인 비용가설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대부호는 양(+)의 부호로 예상한다. LEV 변수는 부채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채무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익조정 수준이 증가될 수 있다(Sweeney 1994 ; 최종서 · 광영민 2010 ; 박범진 2013 ; 최정운 등 2014 ; 허광복 2016). 따라서 부채계약가설에 입각해 이익조정 변수와 부채비율 간에는 양(+)의 관계로 예상한다. ROA 변수는 이익조정 수준이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데 비외감 기업의 경우에도 파악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강선민 · 황인태 2007 ; 최정운 등 2014 ; 허광복 2016).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환경 변화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도더미(YEAR)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산업별 특성이 이익조정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중분류 기준 산업더미(IDTY) 변수를 포함하였다.

3. 표본선정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비외감 중소기업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비외감 중소기업의 재무자료는 중소기업 대출을 주로 수행하는 금융기관인 기업은행 재무데이터를 사용하였다.¹²⁾ 연구 대상 중에서 비영리업종과 금융업종은 비교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외하였으며,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자료를 최종표본으로 선정해 분석하였다.

- (1) 비영리업종 및 금융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형태의 비외감 중소기업
- (2) 12월 결산법인

상기와 같은 조건에 의해 7년 간 전체기간을 대상인 기업-연도 자료 중 총 198,657개 자료를 1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발생액 예측오차 모형의 횡단면 추정을 위해 연도별로 산업(중분류)별로 관측수가 20개 미만인 업종에 해당하는 표본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³⁾ 또한 극단치가 연구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고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모형에 사용된 주요 통제변수와 종속변수 중 연속변수에 대해 각각의 변수 상하 1% 내에서 조정(winsorization)하였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본 연구의 최종적인 표본(firm-year)으로서 총 198,164개(기업/연 자료) 표본을 이용하였다.

다음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 내역을 기술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종 표본 중에서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은 22,610개이며, 그 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은 175,554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종 표본

구 분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제출 기업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제출 기업	합 계
최종표본 수(기업/년)	22,610	175,554	198,164

다음 <표 2>는 본 연구 표본으로 사용된 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음 표본에 대한 산업 구분은 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의한 17개의 산업을 구분한 내역이다.

- 12) 기업은행 재무데이터의 자료는 법인 형태의 중소기업 외에 법인 형태의 대기업 및 개인 형태의 재무자료도 있으나 본 연구는 법인 형태의 비외감 중소기업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재무제표는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와 그 외 재무제표로 구분된다. 한편 외감 재무제표도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외감 기업 자료로 한정하기 위하여 외감 재무자료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 13) 발생액 이익조정 모형을 연도별 산업별로 추정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표본 수를 제한하였다.

전체 표본에서 업종 중 제조업이 가장 많은 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비중으로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운수업 등의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기업의 산업별 분포 내역

산업 구분 (대분류 기준)	표본 수와 비중	
	Number	Percent(%)
제조업	78,263	39.5%
건설업	45,154	22.8%
도매 및 소매업	40,816	20.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680	4.4%
운수업	7,190	3.6%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88	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21	2.3%
기 타	8,452	4.3%
합 계	198,164	100%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이용한 주요 변수에 대한 전체 표본 및 각 집단별(세무서장 증명 채무제표 제출기업 및 세무대리인 확인 채무제표 제출기업) 기술통계량을 요약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에서는 세무서장 증명 채무제표 제출기업 및 그 외 채무제표 제출기업 표본으로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으며, 각 집단별 변수들의 분포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이익조정변수(EM) 중 수정 Jones 모형을 이용한 재량적 발생액(EM1) 평균값은 전체 표본의 경우 0.0153으로 나타났으며, Kothari et al. 모형을 이용한 재량적 발생액(EM2) 평균값은 0.0094로 나타났다. 그리고 당기에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비율은 전체 표본의 경우 10.38%를 보이고 있으며, 집단 간 비교 시 세무서장 증명 채무제표 제출기업의 경우 12.88%, 그 외 채무제표 제출기업의 경우 10.06%로 세무서장 증명 채무제표 제출기업이 손실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 기술통계량

Panel A : 전체 표본 기술통계량							
구분 및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표본수
전체 표본기업	EM1	0.0153	0.2329	-0.6638	0.0036	0.8256	198,164개
	EM2	0.0094	0.2115	-0.6175	0.0020	0.7267	
	Dnon	0.8859	0.3179	0.0000	1.0000	1.0000	
	Dloss	0.1038	0.3050	0.0000	0.0000	1.0000	
	SIZE	14.4431	0.9678	11.9670	14.5048	16.2115	
	LEV	0.6136	0.2499	0.0000	0.6420	1.9220	
	ROA	0.0645	0.1152	-0.3263	0.0474	0.8279	
	CFO	0.0337	0.2531	-0.8549	0.0295	1.0476	
Panel B : 두 가지 집단 간 주요 통제변수들의 평균 값 차이검증							
통제변수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제출기업 (N=22,610개)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제출기업 (N=175,554개)		t값(유의확률)		
Dloss	0.1288		0.1006		12.08(0.0001)		
SIZE	14.3594		14.4539		-13.03(0.0001)		
LEV	0.6330		0.6111		11.68(0.0001)		
ROA	0.0628		0.0648		-1.80(0.0711)		
CFO	0.0474		0.0320		6.39(0.0001)		

(주) 변수의 정의

 $EM_{i,t}$: 수정 Jones 모형을 이용한 i기업의 t기의 재량적 발생액[EM1 = DAC_{mj}]Kothari et al. 모형을 이용한 i기업의 t기의 재량적 발생액[EM2 = DAC_k] $Dnon_{i,t}$: 재무제표 종류를 구분하는 더미(세무대리인 확인 기업이면 1, 그 외 증명은 0) $Dloss_{i,t}$: 결손 유무를 구분하는 더미(당기순이익 < 0 집단이면 1, 그 외는 0) $SIZE_{i,t}$: t기의 기업규모[$=\ln(t$ 기 자산총계)] $LEV_{i,t}$: t기의 부채비율[$=$ 총부채 $\div$ 총자산] $ROA_{i,t}$: t기의 총자산수익률[$=$ (t)기 당기순이익 $\div$ (t-1)기 자산총계] $CFO_{i,t}$: t기의 영업현금흐름비율[$=$ (t)기 영업현금흐름 $\div$ (t-1)기 자산총계]

그리고 주요 통제변수로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제출기업과 그 외 재무제표 제출기업의 기업규모(SIZE)는 큰 차이가 없으며, 부채비율(LEV) 및 영업현금흐름 비율(CFO)은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제출기업이 그 외 재무제표 제출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총자산수익률(ROA)은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제출기업이 그 외 재무제표 제출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제시된 <표 4>는 본 연구가 사용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익조정변수(EM) 중 수정 Jones 모형을 이용한 재량적 발생액(EM1)과 부채비율 및 영업현금흐름비율 변수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재량적 발생액(EM1)과 더미변수(Dnon), 기업규모 및 총자산수익률 변수 간에는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익조정변수(EM) 중 Kothari et al. 모형을 이용한 재량적 발생액(EM2)과 영업현금흐름비율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채비율 간에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재량적 발생액(EM2)과 더미변수(Dnon), 기업규모 및 총자산수익률 변수 간에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표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Panel A : 비외감 기업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	EM1	EM2	Dnon	SIZE	LEV	ROA	CFO
EM1	1	0.9912***	0.0242***	0.0269***	-0.0230***	0.1481***	-0.8710***
EM2		1	0.0209***	0.0340***	-0.0021	0.1220***	-0.8759***
Dnon			1	0.0311***	-0.0280***	0.0054**	-0.0190***
SIZE				1	0.1146***	-0.0097***	-0.0050*
LEV					1	-0.2849***	-0.1297***
ROA						1	0.2915***
CFO							1

(주) Pearson 상관계수

1. ***, **, * : 양측검증 시 1%, 5%, 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2. 변수에 대한 정의
 $EM_{i,t}$: 수정 Jones 모형을 이용한 i기업의 t기의 재량적 발생액[$EM1 = DAC_{mj}$]
 Kothari et al. 모형을 이용한 i기업의 t기의 재량적 발생액[$EM2 = DAC_k$]
 $Dnon_{i,t}$: 재무제표 종류를 구분하는 더미(세무대리인 확인 기업이면 1, 그 외 증명은 0)
 $SIZE_{i,t}$: t기의 기업규모[$=\ln(t)$ 자산총계]
 $LEV_{i,t}$: t기의 부채비율[$=\text{총부채} \div \text{총자산}$]
 $ROA_{i,t}$: t기의 총자산수익률[$= (t)$ 기 당기순이익 $\div (t-1)$ 기 자산총계]
 $CFO_{i,t}$: t기의 영업현금흐름비율[$= (t)$ 기 영업현금흐름 $\div (t-1)$ 기 자산총계]

2. 단일변량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제출기업과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제출기업의 이익조정 측정치의 평균값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수검증을 통해 분석

하였는데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이는 가설 1의 단일변량 검증에 해당하며, t통계치는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제출기업과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제출기업의 모집단 모평균의 차이가 영(0)인 귀무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 간 독립표본의 모수적 검증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분석결과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제출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제출기업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더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제출기업에 비해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제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위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상향하는 이익조정을 행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제출 기업과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제출 기업의 이익조정 성향에 대한 평균차이

구 분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제출기업 (N=22,610개)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제출기업 (N=175,554개)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제출기업과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제출기업의 차이	
	평균값	평균값	평균차이 (Diff)	t값 (유의확률)
EM1	-0.0008	0.0172	-0.0181	-8.34*** (0.0001)
EM2	-0.0039	0.0108	-0.0147	-5.92*** (0.0001)

1. EM1과 EM2의 모평균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t검정한 결과임
2. ***, **, * : 양측검증 시 1%, 5%, 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3. 변수의 정의

$EM_{i,t}$: 수정 Jones 모형을 이용한 i기업의 t기의 재량적 발생액[EM1 = $DACm_j$]

Kothari et al. 모형을 이용한 i기업의 t기의 재량적 발생액[EM2 = $DACK$]

3. 다변량 분석

가. 가설1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다음에 제시된 <표 6>은 앞서 살펴보았던 단일변량 분석결과에 추가하여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변량 회귀모형을 통하여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대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연구모형 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구모형1] $EM_{i,t} = \beta_0 + \beta_1 Dnon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ROA_{i,t} + \beta_5 YEAR + \beta_6 IDTY + \epsilon_{i,t}$		
Variable	EM(Earnings Management)	
	연구모형	
종속변수	EM1	EM2
Intercept	-0.197 (-4.80) ^{***}	-0.182 (-3.91) ^{***}
Dnon	0.019 (9.27)^{***}	0.016 (6.75)^{***}
SIZE	0.009 (11.23) ^{***}	0.009 (9.88) ^{***}
LEV	0.031 (10.28) ^{***}	0.047 (13.59) ^{***}
ROA	0.314 (55.38) ^{***}	0.271 (39.03) ^{***}
ΣYEAR	Included	Included
ΣIDTY	Included	Included
Adj-R ²	0.028	0.020
F value	155.71 ^{***}	80.58 ^{***}
N(firm-year)	198,164	198,164

1. ***, **, * : 양측검증 시 1%, 5%, 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2. 변수의 정의

$EM_{i,t}$: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EM1 = $DACmj$]

Kothari et al.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EM2 = $DACK$]

$Dnon_{i,t}$: 재무제표 종류를 구분하는 더미(세무대리인 확인 기업이면 1, 그 외 증명은 0)

$SIZE_{i,t}$: t기의 기업규모[=ln(t기 자산총계)]

$LEV_{i,t}$: t기의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ROA_{i,t}$: t기의 총자산수익률[=(t기 당기순이익÷(t-1)기 자산총계)]

$YEAR$: 연도 더미

$IDTY$: 산업별 구분 더미

연구모형 1은 본 연구의 가설 1의 검증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연도더미(YEAR) 변수와 중분류 기준 산업더미(IDTY) 변수가 포함되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F 값이 1% 이하를 나타내어 통계 상 유의한 수준으로서 모형 설정에 적합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회귀모형 상 VIF 값이 대부분이 1 주변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 1은 제출된 재무제표 차이에 따른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재무제표 종류를 구분하는 더미변수인 D_{non} 의 계수는 1%의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제출기업에 비해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제출기업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높게 조정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가설 1은 지지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비외감 기업의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라 이익조정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단순한 장부확인에 불과한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기업이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보다 이익을 상대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모형 1의 통제변수들에 대한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IZE 변수는 종속변수인 발생액 이익조정 변수(EM1과 EM2)에 대하여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종서·곽영민(2010), 최정운 등(2014), 허광복(2016)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는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익조정 규모를 축소하는 정치적 비용가설과는 상반되는 결과로서, 상장 및 외감 기업에 비해 비외감 기업의 경우 정치적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을 위하여 기업규모를 일정 수준 부풀리기 위해 오히려 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가능성으로 인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LEV는 발생액 이익조정 변수(EM1과 EM2)와 유의한 양의 관계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최종서·곽영민(2010), 박범진(2013), 최정운 등(2014), 허광복(2016)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 결과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이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부채계약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비외감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주요한 외부 자금 조달원이므로 신규 차입을 위해 현재 타인자본 집중도가 이익조정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줌으로써 비외감 기업에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관련 의사결정이 이익조정의 주요 동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ROA 변수는 발생액 이익조정 변수와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관계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강선민·황인태(2007), 최정운 등(2014), 허광복(2016)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통제변수들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면 비외감 기업의 경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클수록, 총자산수익률이 클수록 재량 발생액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 가설 2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표 7>과 <표 8>은 적자보고회피 목적에 따른 이익조정 현상이 비외감 기업의 경우에도 존재하고 있는지와 비외감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 종류에 따라 이익조정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모형 2와 3은 본 연구의 가설 2의 검증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연구모형 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구모형2] $EM_{i,t} = \beta_0 + \beta_1 Dnon_{i,t} + \beta_2 Dloss_{i,t} + \beta_3 SIZE_{i,t} + \beta_4 LEV_{i,t} + \beta_5 ROA_{i,t} + \beta_6 YEAR + \beta_7 IDTY + \epsilon_{i,t}$		
Variable	EM(Earnings Management)	
	연구모형	
종속변수	EM1	EM2
Intercept	-0.188 (-4.56) ^{***}	-0.171 (-3.68) ^{***}
Dnon	0.018 (9.09) ^{***}	0.015 (6.58) ^{***}
Dloss	-0.023 (-9.37) ^{***}	-0.028 (-10.52) ^{***}
SIZE	0.008 (10.54) ^{***}	0.008 (9.28) ^{***}
LEV	0.035 (11.39) ^{***}	0.050 (14.60) ^{***}
ROA	0.288 (45.53) ^{***}	0.234 (30.07) ^{***}
ΣYEAR	Included	Included
ΣIDTY	Included	Included
Adj-R ²	0.028	0.021
F value	153.20 ^{***}	81.88 ^{***}
N(firm-year)	198,164	198,164

1. ***, **, * : 양측검증 시 1%, 5%, 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2. 변수의 정의

$EM_{i,t}$: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EM1 = $DACm_j$]

Kothari et al.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EM2 = $DACk$]

$Dnon_{i,t}$: 재무제표 종류를 구분하는 더미(세무대리인 확인 기업이면 1, 그 외 증명은 0)

$Dloss_{i,t}$: 결손 유무를 구분하는 더미(당기순이익 < 0 집단이면 1, 그 외는 0)

$SIZE_{i,t}$: t기의 기업규모[=ln(t기 자산총계)]

$LEV_{i,t}$: t기의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ROA_{i,t}$: t기의 총자산수익률[=(t기 당기순이익÷(t-1)기 자산총계)]

$YEAR$: 연도 더미

$IDTY$: 산업별 구분 더미

앞의 <표 7>은 연구모형 2를 통해 비외감 기업이 적자를 보고할 경우의 이익조정 성향을 분석한 것이다. 결손 유무를 나타내는 Dloss의 계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

났다. 이는 비외감 중소기업의 경우 손실이 발생 시 이익을 상향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외감 중소기업의 경우 적자보고회피를 위해 발생액 이익조정을 통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한다는 선행연구(최종서·곽영민 2010)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외감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자금조달의 원천이 다양하지 않는 비외감 기업의 경우에는 흑자 보고 이외의 적자 보고 시에는 이익의 상향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외감 중소기업의 경우 적자보고회피를 위하여 발생액 이익조정을 통해 이익의 상향조정 현상이 나타났으나 비외감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적자보고 시 비외감 기업이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라 이익조정 현상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다음의 <표 8>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 8> 연구모형 3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구모형3] $EM_{i,t} = \beta_0 + \beta_1 Dnon_{i,t} + \beta_2 Dloss_{i,t} + \beta_3 Dnon_{i,t} \cdot Dloss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beta_6 ROA_{i,t} + \beta_7 YEAR + \beta_8 IDTY + \epsilon_{i,t}$		
Variable	EM(Earnings Management)	
	연구모형	
구분	EM1	EM2
Intercept	-0.185 (-4.51)***	-0.170 (-3.65)***
Dnon	0.017 (7.95)***	0.015 (5.92)***
Dloss	-0.033 (-5.44)***	-0.033 (-4.79)***
Dnon · Dloss	0.011 (1.80)*	0.005 (0.75)
SIZE	0.008 (10.52)***	0.008 (9.27)***
LEV	0.035 (11.40)***	0.050 (14.61)***
ROA	0.288 (45.49)***	0.234 (30.06)***
ΣYEAR	Included	Included
ΣIDTY	Included	Included
Adj- R^2	0.028	0.021
F value	147.64***	78.75***
N(firm-year)	198,164	198,164

1. ***, **, * : 양측검증 시 1%, 5%, 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2. 변수의 정의

$EM_{i,t}$: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EM1 = DACm_j$]

Kothari et al.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EM2 = DACk$]

$Dnon_{i,t}$: 재무제표 종류를 구분하는 더미(세무대리인 확인 기업이면 1, 그 외 증명은 0)

$Dloss_{i,t}$: 결손 유무를 구분하는 더미(당기순이익 < 0 집단이면 1, 그 외는 0)

$SIZE_{i,t}$: t기의 기업규모[$= \ln(t기\ 자산총계)$]

$LEV_{i,t}$: t기의 부채비율[$= 총부채 \div 총자산$]

$ROA_{i,t}$: t기의 총자산수익률[$= (t기\ 당기순이익 \div (t-1)기\ 자산총계)$]

$YEAR$: 연도 더미

$IDTY$: 산업별 구분 더미

연구모형 3은 비외감 기업의 제출 재무제표 종류 간에 적자보고 여부와 이익조정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재무제표 종류를 나타내는 $Dnon$ 과 적자보고 여부를 나타내는 $Dloss$ 의 교차항인 $Dnon \cdot Dloss$ 의 계수는 수정 Jones 모형을 이용한 재량적 발생액(EM1)의 경우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Kothari et al. 모형을 이용한 재량적 발생액(EM2)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비외감 기업의 경우 적자보고 시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제출기업에 비해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제출기업이 이익을 상대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본 연구의 가설 2는 일부 지지됨을 의미하고 있다.

<표 6>에서 <표 8>까지의 분석 결과는 비외감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의 차입을 위해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라 이익조정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기업의 경우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기업에 비해 은행 대출을 위해 이익을 부풀리는 상향 이익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비외감 기업의 경우 적자보고 시에도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이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보다 이익을 상대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단순한 장부확인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보다 세무서장 확인 재무제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외감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조달 목적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조정해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지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과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 간의 비교를 통해 이익조정 행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비외감 대상 중소기업의 회계목적은 정확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측정이라는 기업회계의 목적보다는 조세

측면에서의 절세와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한 회계 목적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사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신용 평가를 위해 재무제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외감 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요구하나, 비외감 대상 회사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재무제표,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외감 회사에 대해 요구하는 재무제표를 제3자 확인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는 세무신고 사실만 세무대리인이 확인하여 준 재무제표로 진위 여부(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표와 동일한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님)는 불문이며, 세무서장이 증명한 재무제표는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로 표준재무제표 증명으로 홈택스 민원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전체 산업체의 99% 이상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별도로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의 감사를 받지 않는 비외감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외감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회계감사제도 외의 방법으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이익조정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상장 기업 또는 일부 비상장 외감 기업을 표본으로 이루어져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차지하는 비외감 기업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외감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라 발생액 이익조정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실증 검증한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외감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정보를 제시하여 금융기관 및 정책담당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총 198,164개 비외감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집단 간 이익조정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Dechow et al.(1995)과 더불어 Kothari et al.(2005)의 모형을 통해 도출한 두 가지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이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에 비하여 발생액이 높아 이익을 상대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비외감기업이 적자를 보고한 경우 이익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자 보고 비외감 기업인 경우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이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에 비해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인회계사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비외감 기업이 금융기관 차입 시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이외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발생액 이익조정을 통하여 회계이익을 상향조정하는 현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의 경우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같음을 증명하는 확인 수준을 가지는 것에 반해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는 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표와 동일한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기관 차입 시 발생액 이익조정의 상향 조정 현상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비외감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금융기관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이익조정의 정

도가 제출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파악의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한 공헌점과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 이익조정에 대한 선행연구가 상장기업을 포함한 외감 기업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살펴본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데이터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논의가 제한적이었던 비외감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한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라 이익조정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는 차별점이 있다. 그리고 비외감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시 행해지는 이익조정 행태에 대한 실증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에 비외감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확인 및 증명에 대한 정책 수립과 관련한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이익조정 수단으로 사용한 계량적 발생액은 계량통계학적 모형 추정을 통하여 도출된 것이므로 관련 모형의 불완전성에 따라 측정오류 상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실물이익조정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용한 이익조정 척도가 기업 전반에 대한 이익조정 행위를 측정하였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외감 중소기업 전체가 아닌 기업은행 보유 데이터만을 활용한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향후 비외감 기업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에게 데이터 확보의 수월성이 해결되길 바라며 다양한 이익조정 측정 방법을 고려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강성민 · 황인태. 2007. “외부감사가 비상장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2권 제2호 : 21-59.
- 곽수근 · 박종일. 2015. “실제 이익조정과 부채조달비용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5호 : 243-283.
- 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 2016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김광윤 · 정정용. 2005. “세무대리인의 중소기업 재무제표 확인 및 증명업무에 대한 인식차이 연구”. 세무학연구 제22권 제2호 : 195-222.
- 김동관. 2004. “비외감대상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0권 : 305-331.
- 김권중 · 김문철 · 전중열. 1998. “신규 공개기업의 이익조정과 내부자거래”. 한국증권학회발표논문집.
- 박범진. 2013. “이익유연화 정도와 부채특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18권 제1호 : 251-271.
- 박성배 · 조동수. 2006. “비상장 중소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4권 제3호 : 1-29.
- 배길수. 1999. “발생액 예측모형과 각 모형의 예측오차 비교”. 회계학연구 제24권 제2호 : 29-50.
- 오현택. 1998.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및 세제지원방향”. 중소기업연구 제20권 제2호 : 93-118.
- 이세용. 2009. “발생액의 질과 회계이익의 정보효과”.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4호 : 9-41.
- 중소기업중앙회. 2018. 2017년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 최정운 · 박성욱 · 나형중 · 송혁준. 2014.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6권 제3호 : 161-177.
- 최종서 · 곽영민. 2010. “비상장 중소기업의 발생액 및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실태”. 회계저널 제19권 제1호 : 37-76.
- 허광복. 2016. “금융기관 차입 시 비외감 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 외감 기업과의 비교”. 회계연구 제21권 제1호 : 53-77.
- 허광복 · 박희우 · 유관희. 2012. “중소기업 경영 및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언”. KBR 제16권 제1호 : 35-50.
- Burgstahler, D., and I. Dichev. 1997.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ases and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4 (December) : 99-126.
- Dechow, P. M., R. G. Sloan, and A. P.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Vol. 70 (2) : 193-225.

- Jones, J. J. 1991.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Research* Vol. 29 (Autumn) : 193–228.
- Kothari, S.P., J. Leone, and C. E. Wasley.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9 (1) : 163–179.
- Sweeney, A. 1994. Debt – covenant Violation and Manager’s Accounting Respon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 281–309.

The Comparative Study on Non – Audited Company’s Earnings Management between Tax Agent’s Confirmation and Tax Government’s Certific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Hue, KwangBok**

— <Abstract> —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which do not receive the external audit have fewer interested parties for the accounting information than the large listed and audited companies. This study analyzes whether non – audited firms in Korea are motivated to engage in upward earnings management to facilitate borrowing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uses non – audited firms’ observation of year 2004 to year 2010, and investigates the extent of accrual earnings management by the type of confirmation on financial statements(tax agent’s confirmation vs tax government’s certification) and by income types.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upward earnings management tendency of tax agent’s confirm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of non – audited firms is stronger than tax government’s certific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of non – audited firms. Furthermore, tax agent’s confirm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of loss incurred companies show upward earnings management than tax government’s certific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of loss incurred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on – audited firms conduct earnings management via accruals to achieve loan borrowing goals. It provides clues to suspect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non – audited firms. It will be helpful for academics and practitioners for understanding the earnings management of non – audited firms by the type of confirmation and certific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Key words> Non – audited Firms, Accrual Earnings Management, Confirmation on Financial Statement, Certification on Financial Statement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Dongduk Women’s University grant”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Social Science, Dongduk Women’s University, kbhur@dongduk.ac.kr

〈부 록〉

1. 서식 1 [세무서장 확인 재무제표]

발급번호 Issuance No.	표준재무제표증명 Certificate of Standards Financial Statements ☐ 개인(Individual) ☐ 법인(Corporation)			처리기간 Processing Time
				즉 시 Immediately
상 호 (법인명) Name of Company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성 명 (대표자) Name of Representativ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업 태 Business Type				
종 목 Business Item				
사 업 장 Business Place				
사 업 연 도 Tax Year		첨 부 서 류 명 List of attachments	- 표준대차대조표 Standard Balance Sheet - 표준순익계산서 Standard Income Statement - 표준원가명세서 Standard Cost Sheet	
불임의 표준재무제표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ttached standard financial statements are equal to the financial statements that I submitted to a district tax office during the final return period for Corporate(income) tax base.				
접수번호 Receipt No.	년 월 일 Year Month Day 세 무 서 장 (인) Head of () District Tax Office (Stamp) (인) (Stamp)			
담당부서 Department				
담 당 자 Staff in charge				
연 락 처 Telephone No.				

2. 서식 2[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발급번호		재무제표확인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① 주소또는거소 (법인본점소재지)			
	② 사업장소재지		③ 전화번호	
	④ 상호(법인명)		⑤ 사업자 등록번호	
	⑥ 성명(대표자)		⑦ 주민(법인) 등록번호	
	⑧ 사업의종류		⑨ 종 목	
	⑩ 용 도		⑪ 수 량	
⑫ 확인받고자 하는 재무제표(별도첨부)		과세년도 (사업년도)	재무제표명칭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제조원가명세서	
별첨한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로서 전자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귀하				
첨부서류 : 확인받고자 하는 재무제표 등				
확인자	사업장소재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전화번호	
첨부한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로서 전자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인)				
※ 본 재무제표확인인은 세무서에 신고된 표준재무제표의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재무제표상의 계정과목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